

# 치안시책자료

제2호

## 목 차

■ 치안칼럼/지도위원 차용석	2
■ 집중연구	
❖ 경찰의 과학수사체제 확립을 위한 제언/총경 한병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활성화를 중심으로)	5
❖ 정보통신과 경찰행정/지도위원 여운방	17
❖ 보행자 교통사고와 안전대책/연구위원 이순철	29
■ 국내외 치안동향	
❖ 미국도 자전거 순찰	42
❖ 브래디법의 시행을 위한 법집행단위들간의 협조	44
❖ 선진국 첨단 수사장비 소개	46
❖ 일본 경찰청, 「'94경찰백서」 각의에 제출	48
❖ 일본 경찰, 총포관리대책 강화	49
■ 연구소 소식	50
■ 분석/연구소의 딜레마	54
■ 최신판례	57
■ 현장제언/경사 박수갑	68

### 치안시책자료 제2호

발행일 : 1994년 9월 21일

발행인 : 유 병 국

발행처 : 치안연구소

인쇄처 : (주) 범 신 사

(비매품)

#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여부론에 부쳐

차    용    석  
(한양대 법대학장)

**우** 리나라의 경찰이 출범한지도 어언 50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숭한 영욕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경찰청이 내부부의 외청으로 독립되고, 경찰 인원도 15만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매년 120여명의 경찰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조직상으로는 어느 국가기관에 못지 않은 방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과연 조직이나 규모에 합당한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중 하나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의 인정문제이다.

국가 권력은 적정하게 분립되어야 하고, 분립된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핵심이다. 그러한 점에서 수사권, 공소제기여부결정권, 공소유지권, 재판집행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 중 수사권에 관해 경찰에게 1차적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는 결코 검찰이나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떠한 제도를 통해 가장 잘 보장할 수 있겠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전형적인 대륙법 계통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즉, 검찰이라는 단일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상명하복관계로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와 경무관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수사상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4조), 수사상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서장이닌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검사의 영장신청권독점(헌법 제12조3항 및 형소법 제201조, 제215조2항) 등이 있다.

이러한 법제하에서 독자적 수사권이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관계를 종래의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말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경찰수사권을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골격속에 어떠한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독자 수사권 인정 문제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크게 2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론면에서 볼 때 수사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이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한다는 것은 통일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한다. 둘째, 경찰관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즉, 경찰관 개개인의 법률지식이나 인권의식이 부족하여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공소유지에 적합한 수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첫째이유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활동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개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기동성이나 조직성을 감안할 때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독자적으로 인정할 뿐, 검찰의 보충수사나 양기관의 일반적인 협조관계는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론상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어온 것이 둘째이유인 경찰의 자질론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의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경찰의 독자수사권 인정을 방해해온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자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대략 내면적 인격, 법률지식, 인권의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내면적 인격이란 지식이나 사회의 지명도와는 달리 개인의 고유한 품성에 관한 것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란 간단치 않다. 이러한 점에서 개개 경찰관이 평균적으로 인격적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 법률지식에 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검사에 비해 경찰의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타당할 것도 같다. 그러나 경찰에게 요구되는 법률지식이란 고도의 법률지식이 아닌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실무에 관한 지식에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를 주로 하는 사법경찰의 법률지식은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지식의 부족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보충될 수 있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의식이다. 그러나 인권의식의 부족은 비단 경찰뿐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기관의 공통의 문제이다.

문제는 지식이나 의식의 부족을 이유로 독자적 수사권의 인정을 항상 미루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과 동시에 수사의 오류가 있을 때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耐性있는 경찰로 성장시켜야 할 것인가이다.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언제나 검찰에 종속되어 있어서야 저절로 자질이 향상되겠는가? 마치 사람을 성장시킴에 있어서도 일정한 자율권을 주고 책임을 물을 때 그 성장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보호나 혹은 종속만을 강요해서는 올바른 의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바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독자수사권의 인정문제는 40여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되어 왔고 거기에



# 경찰의 과학수사체제 확립을 위한 제언

— 과학수사연구소 활성화를 중심으로 —

총경 한 병 락  
(범죄대책연구실장)

## I. 서 론

우리경찰의 범죄수사체제를 철저한 증거위주의 과학수사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수사행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은 물론 첨단 과학장비 확보를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도 미흡하지만 과학적 수사체제 구축에도 소극적이다. 연초 3인조 폐강도사건 등 일련의 강력사건을 보면 그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해져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여 수사가 벽에 부딪히는가 하면 무리한 자백강요수사로 김기웅 순경 사건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91년 선진 민주사회에 걸맞는 경찰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으로 조직개편시 당연히 경찰청 직속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과학수사연구소는 식연치 않은 이유들로 수사와 무관한 내무부 직속 기관으로 남게 되어 과학수사에 대한 여망을 정

부 스스로가 외면하였다.

실상가상으로 문서감정을 둘러싼 감정비리사건까지 발생하여 과학수사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고 과학수사연구소는 설 자리조차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후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중시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 사법개혁에 경찰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증거에 의한 피의자 신병확보 등 경찰수사의 과학화는 절대 명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체제를 과학수사체제로 대 전환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학수사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하겠다.

## II. 과학수사연구소의 실태 및 문제점

우리경찰의 과학수사체제를 개관해 보면 내무부 직속기관으로 과학수사연구소와 남부분소가 있고 경찰청 형사국 감식과와 지방경찰청 감식계, 경찰서 형사과(수사과) 감식반으로 연결되는

◁ 집중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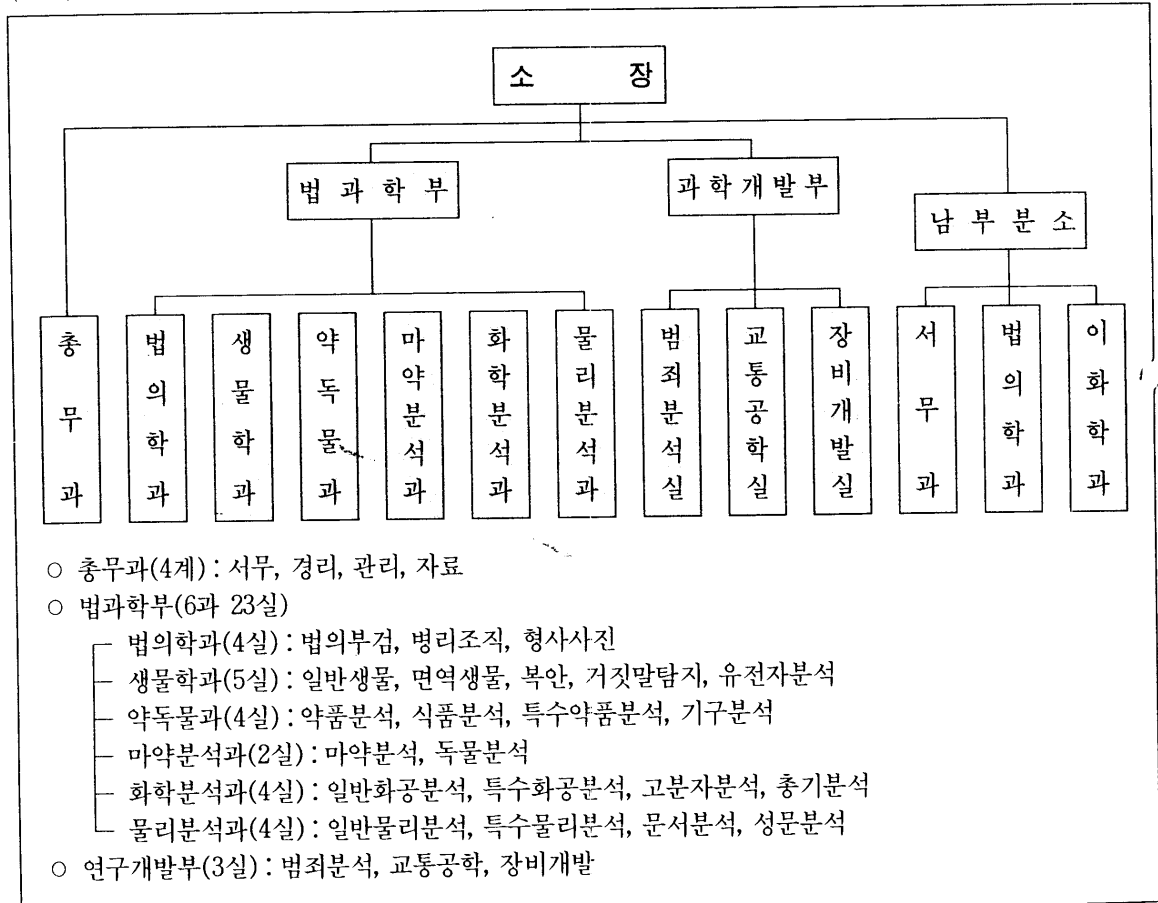
경찰감식기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현장의 증거채증에 대한 수사 활동인 감식은 경찰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증거채증 이후의 증거물의 증명력을 전문가에 의해 확인하는 감정은 내무부 소속의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과학수사연구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경찰의 감식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1. 연 혁

〈표 1〉



'91년 경찰청으로 조직개편시 연구소가  
경찰청 직속기관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내무부 직속기관으로 남게 되므로서  
내무부에 마땅한 주관부서가 없어 관리가  
소홀하고 감독의 사각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심부족으로 예산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 니라는 이유 등으로 내무부의 직속기관으로 잔류  
하게 되었다.

수사업무와 무관한 내무부 직속기관으로 남게  
됨에 따라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가 하면 연구  
소의 분위기는 침체된 가운데 문서감정을 둘러싼  
비리사건이 발생하자 '92. 5. 7 내무부 훈령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과학  
수사연구소 운영전반에 대한 감독을 경찰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 2. 조 직

● 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본소  
(本所)의 2部 1課 6科 3室 및 1分所로 편제되어  
있으며 <표 1>과 같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91년 경찰청으로 조직개  
편시 연구소가 경찰청 직속기관으로 이관되지 못  
하고 내무부 직속기관으로 남게 되므로서 내무부  
에 마땅한 주관부서가 없어 관리가 소홀하고 감  
독의 사각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관심부족으  
로 예산 등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게 되었다.

'92. 5월부터 연구소의 감독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소속의 상이에 따른 근본적인 제약  
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고 조직관리 측면만을

중시하여 감독업무를 감식과가 아닌 수사과에 관  
장시켜 경찰감식기능과 연구소와의 연계성이 고려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선 수사활동을 지원하  
는 과학수사체제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예  
를 들면 CCTV에 녹화된 용의자 식별 등 형사사진  
식별 기능이 경찰청 감식과와 연구소에 중복되어  
있는가 하면 일선에서 문서감정시 서체(書體)와  
유류지문 분석을 위해 연구소와 감식과에 각각 의  
뢰해야 하는 등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3. 인 력

연구소의 총 정원은 190명이며 이중 전문인력  
이 115명, 관리인력 27명, 보조인력 48명 등으로  
감정·연구분야 전문인력이 전체인력의 60%를 차  
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감정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처  
우가 미흡하여 정원대로 감정요원을 충원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소의 인력은  
크게 전문적인 연구분야와 관리분야로 대별되는  
바 관리분야는 경찰공무원과 내무부 일반직 행정  
공무원으로 나누어져 그 인적 구성이 사실상 3원  
화 되어 있다.

그 결과 공동체의식이 부족하고 갖가지 갈등요

◁ 집중연구 ▷

인이 잠재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총무과의 과·계장은 경찰을 배치하고 그 밑에 내무부 행정공무원을 배치하여 서로 다른 직종에서 야기되는 이질감 등으로 지휘·감독계통이 제대로 서지 않고 또한 잦은 교체와 연구소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연구·감정 업무의 지원·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2〉 인력구성현황

구분	인원	내역
계	190명	
전문인력	115명	연구직 83, 기술직 15, 별정직 16, 전문직 1
관리인력	27명	경찰직 7, 행정직 10, 기술직 10
보조인력	48명	기능직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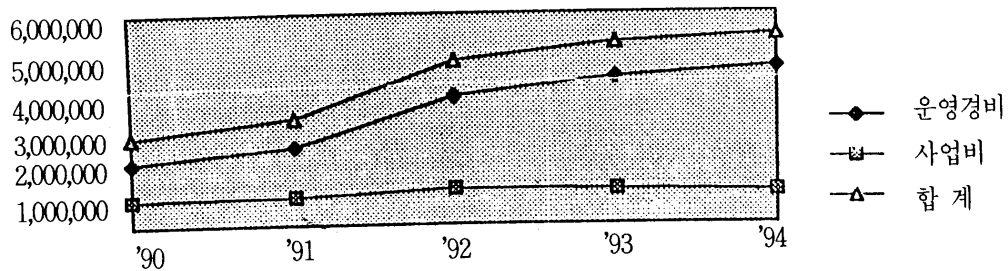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연도	'90	'91	'92	'93	'94
총액	2,564,470	4,198,986	5,112,487	5,164,379	5,655,996
운영경비	1,824,280	2,249,635	3,659,374	4,195,318	4,472,123
사업비	740,188	803,351	1,012,488	969,061	910,925
분소신축비	-	1,146,000	440,625	-	272,948

※ '88~'92년 예산은 치안본부 책정, '93~'94 예산은 내무부 책정

〔그림 1〕



※ 분소신축비를 제외했음에도 '92년도를 기준으로 예산변화가 뚜렷함을 볼 수 있음.

4. 예산

연구소의 '94년도 예산은 총 59억 5,6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운영경비가 44억 7,21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약과 장비구입 등 필수사업비는 9억 1,093만원으로 15%에 불과하다.

연구소가 내무부 직속기관으로 남게 되면서부터 파생된 문제중에 하나가 예산이다. 경찰에서 연구소예산을 관리하던 경찰청 개청전인 '91년 연구소예산은 총 41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6,400만원 보다 64% 증액되었으며 이중 영남분소 신축비 11억 4,6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감정처리에 있어 '93년의 경우  
 요원 1인당 월 평균 37건씩 총 45,057건을  
 처리하여 감정의 질적향상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의뢰기관별로는 경찰이 96%를 차지하고  
 검찰 2.3%, 나머지 법원, 군  
 등에서 의뢰하고 있다.

● 19% 증액되었고, '92년에는 22% 증액되었으나  
 경찰청 개청 이후에는 연구소 예산확보에 소극적  
 으로 대응하여 '9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 증  
 액에 불과하였으며 '94년도에는 인건비 등 운영  
 비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시약과 장비구입 등 필  
 수사업비는 오히려 6% 감액되었다.

### 5. 장 비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158종 451  
 대로서 이중 감정장비는 139종 404대이며 일반장  
 비는 19종 47대이나 이중 단가 50만원 이상되는  
 ● 감정장비중 10년이상 경과한 노후장비가 전체장  
 비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수사연구소가 장비면에서 열등한 것은 노  
 후장비가 많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첨단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선진외국과 비교조  
 차 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연구소의 기본 장비라고 할 수 있  
 는 현미경의 경우 우리 연구소는 약 1,000배 밖에  
 확대되지 않는 현미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선진외  
 국에서는 증거물을 무려 60만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주사형전자현미경을 사용하고 있다.

(표4) 감정장비 노후현황  
 (단가: 50만원 이상)

구입년도	합 계	본 소	분 소
계	404(100%)	371	33
'70년 이전	7(1.8)	6	1
'71~'75	9(2.2)	9	-
'76~'80	19(4.7)	18	-
'81~'85	186(46)	176	10
'86~'90	107(26.5)	101	6
'91 이후	76(18.8)	61	15

### 6. 업무실적

감정처리에 있어 '93년의 경우 요원 1인당 월  
 평균 37건씩 총 45,057건을 처리하여 감정의 질  
 적향상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의뢰기관별  
 로는 경찰이 96%를 차지하고 검찰 2.3%, 나머지  
 법원, 군 등에서 의뢰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범죄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전제한다면 감정의뢰는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이나 검찰과 군의 경우에는 감정의뢰가 줄어들고  
 있는 바 연구소의 경찰청 소속화를 반대하는 문  
 제와 관련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 이외에 감정기법을 매년 7건 정도씩 개발하

◁ 집중연구 ▷

〈표 5〉 감정의뢰 추세 분석

구분	계	경찰	검찰	군	법원	기타
'90년	37,447	35,377	1,577	157	201	135
'91년	38,048	36,438	1,319	76	60	155
'92년	40,753	38,976	1,248	94	240	195
'93년	45,057	43,236	1,129	70	274	348
%	100%	96%	2.3%	0.2%	0.7%	0.8%

※ 분소 감정실적 제외

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발표회에도 매년 4회정도 참석하여 국가간, 연구기관간 교류를 꾀하고 있으나 연구소의 지방분소가 1개소에 불과하여 감정 처리에 급급하고 기법개발등 연구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반대로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지방분소단위에서 거의 모든 감정을 담당하고 중앙의 연구소는 중요사건의 감정과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가 지나치게 감정업무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즉, 석·박사까지 혈액, 모발분석 등 단순감정업무에 매달려 연구실적은 자연히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체 부검 등 법의학 분야는 연구소와는 별도의 기관에 맡기거나 각 지방대학의 법의학교실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소는 부검업무가 중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일반의사와의 사회적 대우격차와 시신다루기를 꺼리는 풍조 등으로 법의학 분야를 중앙의 일부대학에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법의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7. 기 타

가. 분소설치

급증하는 감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권역별

분소설치를 추진, '93. 3월 부산시에 남부분소를 개설하고 전남장성에 서부분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그의 북부분소 등 3개분소를 단계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소설치와 관련하여 감정요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일반대학이나 연수기관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우수한 인력확보계획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나. 처 우

연구소 요원도 공무원으로 다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우하기 때문에 고학력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가 일반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뒤떨어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우수인력 유치에 힘들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열악하다. 현재 연구비의 경우 법의학분야 의사에게 월 36만원이 지급되는 외에 여타 연구관에게는 월 35,000원~55,000원의 낮은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 감정 연구기법 개발 등을 위한 해외연수기회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94년도의 경우 국외여행비는 92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오히려 18% 감액되어

〈표 6〉 최근 5년간 해외 연수 현황

(단기)

구 분	'90	'91	'92	'93	'94 (미정)	
계	8	9	9	5	6	
국비(총무처 예산)	-	-	2	2	3	
자체예산	기술연수	4	5	3	-	2
	학회참석	4	4	4	3	1

과학수사에 대한 예산당국의 인색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 예산의 효율적 투자문제

우리나라에는 연구소 이외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과학수사지도과와 운영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있으며 그 외에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소 등에서 수사기관 요청시 마약, 식품, 환경오염 등에 관한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의 연구·감정기능에 대하여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배분하고 특화시켜 정부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감정역량을 보유하려고 하여 제한된 인적자원과 예산의 낭비는 물론 부처간의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감정분야의 획기적인 신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과 관련하여 연구소와 검찰이 앞을 다투어 유전자는행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다.

생각컨대 모든 강력사건의 초동수사는 경찰이 전담하여 사건현장에서 유전자 분석자료가 되는 혈흔, 정액, 체모 등 증거물을 채취하고 있으며 유전자분석의 전 단계인 생물학적 감정업무를 연구소에서 약 30년간이나 수행해오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인확인을 위한 전과지문, 범죄수법 자료도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전자는행자료 역시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이 과학수사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86년부터 이미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91. 8월에 유전자분석실을 개설하여 꾸준히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 III. 선진외국의 범죄감식제도 (일본과 미국)

#### 1. 일 본

##### 가. 중 앙

경찰청 산하에 「과학경찰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부, 법과학 1부, 법과학 2부, 방법소년부, 교통부 등 5개부가 있으며 부속기관으로 감정소와 법과학연구소가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과학수사에 관한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식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주요사건에 대한 감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일반감정업무는 지방경찰조직에 전담기구를 두어 처리하고 있다.

##### 나. 지 방

(1) 동경도(東京都) 경시청의 과학수사연구소  
동경도 경시청 산하의 「과학수사연구소」에는 법의과, 물리과, 문서감정과, 제1화학과, 제2화학과 등 5개과를 두고 동경도내의 일선경찰관서에서 의뢰하는 범죄사건의 증거물을 검사·감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도내에서 발생하는 변사체에 대한 검안과 부검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동경도에 「감찰의무원」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감찰의무원」(또는 '사인조사소')는 주요 대도시에 설치하고 있으며 감찰의무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관내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협조를 받아 변사체를 처리하고 있다.

◁ 집중연구 ▷

(2) 기타 지방

지방의 경찰본부 형사부에 「과학수사연구소」 또는 「과학수사연구실」을 설치하여 일반범죄 증거물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대판부 경찰본부의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법의학과와 이화학과가 있으며 이러한 과학수사연구소(또는 과학수사연구실)는 전국에 약 5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3) 형사조사관 제도

수사와 감정업무에 경험이 많은 경찰관을 선발하여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연수과정을 거친 다음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 조사 제1과에 1명씩 배치하여 변사체에 대한 입장업무와 부검여부의 결정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형사조사관의 계급은 경정급이다.

2. 미 국

가. 중 앙

연방수사국(FBI)에 8개부 중 제8부에 해당하는 「범죄감식실험소(Laboratory Division)」를 두고 있

으며 그 하부조직으로는 총무과와 문서부, 과학분석부, 특별계획부 등 3부가 있다.

이곳 범죄감식실험소에서는 변사체 부검·검안을 제외한 중요사건의 범죄증거물 감식, 제반 관련자료 수집·분석, 전국 경찰·검찰·법원에 전문적인 과학적 기술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동 실험소의 특별계획부에서는 법정자료를 작성하고 지방경찰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나. 지 방

50개주 수도 및 대도시의 경찰국에 「범죄감식실험소(Crime Laboratory)」를 설치하여 연방수사국의 범죄감식실험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역시 변사체에 대한 부검·검안을 제외한 범죄증거물의 감식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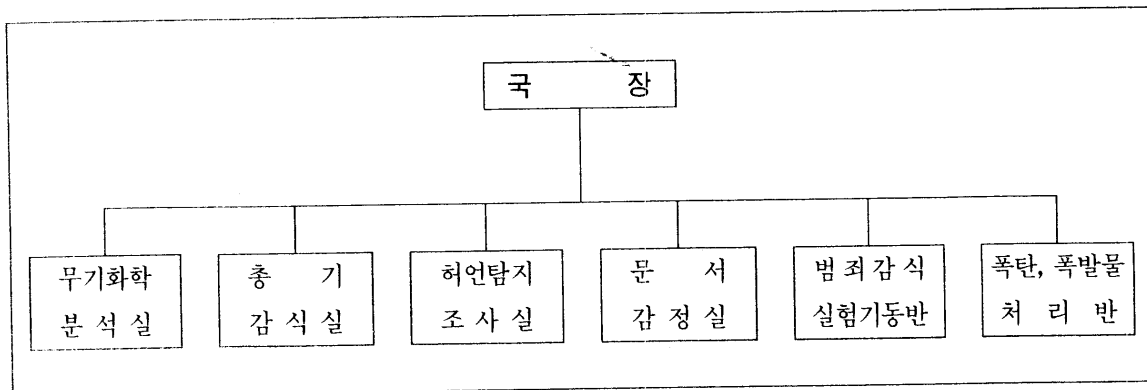
다. 변사체 부검, 검안 기구

전국 주요도시의 시청 산하에 「법의무관사무소」 또는 「검시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변사체 부검과 검안을 전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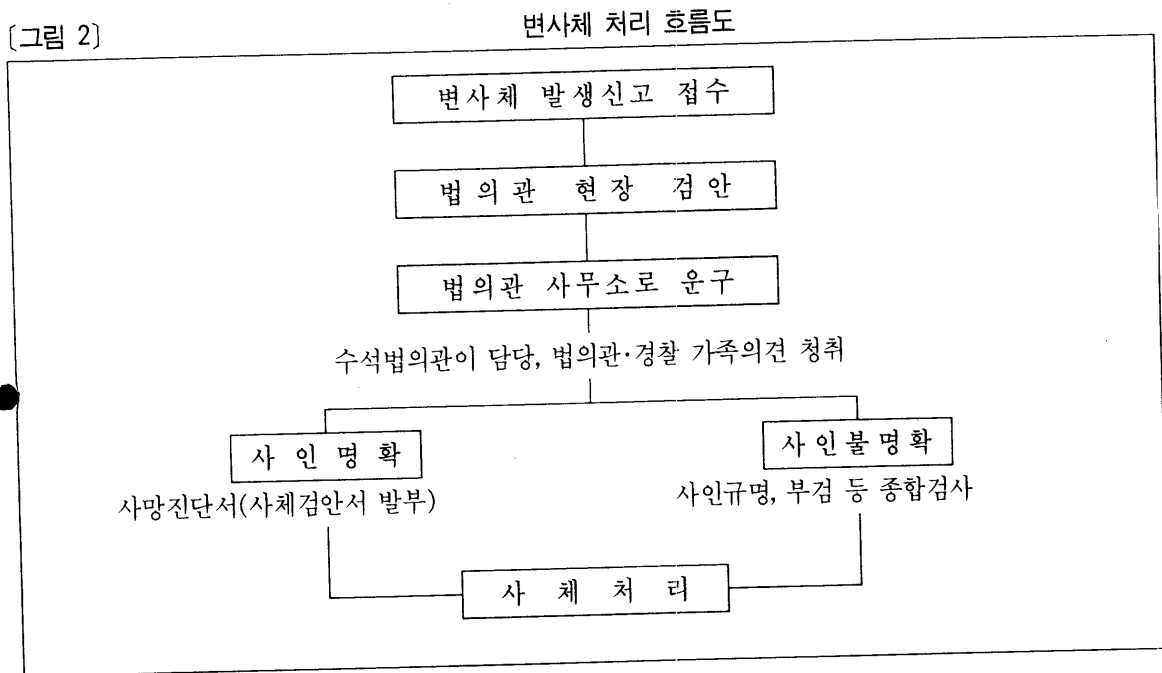
참고로 변사체 처리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표 7〉

Florida주 범죄감식실험소



[그림 2]



[표 8]

각국 과학수사연구소의 조직 및 업무비교

구분	한 국	일 본	미 국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무부산하 과학수사연구소</li> <li>- 증거물 감정 (일반감정업무위주)</li> <li>- 변사체 부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산하 과학경찰연구소</li> <li>- 감식에 관한 연구</li> <li>- 주요사건감정</li> <li>- 하급기관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BI내 범죄감식실험소</li> <li>- 주요사건의 증거물 감정</li> <li>- 자료 수집·분석</li> <li>- 하급기관교육 및 기술지원</li> </ul>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부분소 (3개분소 설치예정)</li> <li>※ 지방경찰청 감식계</li> <li>※ 경찰서 감식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경시청산하 과학수사연구소</li> <li>- 증거물 감정·검사</li> <li>○ 동경도산하 감찰의무원</li> <li>- 변사체 검안·부검</li> <li>○ 그외 법의학교실에서 변사체 부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주 및 대도시경찰국산하 범죄감식실험소</li> <li>- 범죄증거물 감식</li> <li>○ 시청산하 범의무관사무소</li> <li>- 변사체 부검</li> </ul>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미국의 범죄감식제도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를 수 있다.  
 첫째, 경찰 또는 경찰관련기구의 산하조직으로

중앙범죄감식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각 지방마다 범죄감식기관을 두어 감정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선수사를 가까이에

“ 연구소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연구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찰과 연계되도록 경찰청 직속기관으로 하고 연구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로 구성되는 가칭 「과학수사위원회」를 연구소의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연구소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지원하고 따라서 중앙의 감식기관은 중요사건의 감정만 담당하여 감정기법 개발·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셋째, 증거물 감식과 변사체 부검·검안을 2원화하고 의과대학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감식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는 점 등이다.

#### IV. 과학수사연구소 발전방향

지금까지 살펴 본 연구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휘·감독 및 일선의 과학수사 지원체계가 취약하다.

둘째,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량이 과다하다.

셋째, 인원·장비·예산투자가 미흡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 '94. 3월 경찰청에서 마련한 「과학수사연구소 활성화계획」을 참고로 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조 직

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연구소의 위상을 바로 정립하는 것으로서 그 소속을 내무부 직속

기관에서 경찰청 직속기관으로 옮겨 제자리에 있게 하여야 한다.

「연구소가 경찰만의 것이 아니다」, 「공신력 보장」 등은 연구소의 경찰청 소속화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연구소가 경찰청 직속기관이 된다고 하여 타기관에서 연구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공신력 보장을 위하여 연구소를 독립부처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행 정부조직법상 연구기관을 중앙의 독립부처 단위의 기관으로 직제화 시킬 수 없는 제약이 따르므로 공신력 제고를 위한 보완장치를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소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연구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찰과 연계되도록 경찰청 직속기관으로 하고 연구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로 구성되는 가칭 「과학수사위원회」를 연구소의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연구소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소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그 운영감독 및 지원업무 관장기능은 수사과가 아닌 감식과로 하며 「감식」과 「감정」을 체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감식과와 연구소를 통합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지방분소 설치계획도 수정하

여 지방경찰청 감식계와 지방분소를 통합하여 지방경찰청 직속기관으로 가칭 「○○지방범죄감식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일선의 과학수사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의 연구소가 감정 자체보다는 감정기법과 과학수사기법 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국형 범죄감식체제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 덧붙여 지방분소 설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수도권 분소를 우선 설립하여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연구소의 하부조직은 치안연구소가 확대 개편된 점을 고려하여 연구소의 연구개발부(범죄분석실, 교통공학실, 장비개발실)의 기능은 치안연구소의 범죄대책연구실, 교통대책연구실, 과학기술개발연구실에 각각 통합하고 대신 법과학부를 법과학 1부와 법과학 2부로 개편·보강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그리고 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나 연수기관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소 직속기관으로 「법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자체 인력양성 기능을 두도록 해야 한다.

## 2 우수인력 확보 및 사기진작

일반 연구기관에 비해 처우와 근무여건이 열악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연구기관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하여야 할 것이나 공무원 신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우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이들이 명예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소에 종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와 연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연구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 우수인력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인사지침을 제정하여 채용조건을 강화하고 전문감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개경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승진에 있어서는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자원 확보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특별채용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의학 분야는 의과대학과 협조하여 법의학교실을 개설토록 하여 부검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전술한 법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일정학력(전문대졸)이상 소지자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수료후 연구소요원이나 경찰감식요원으로 우선 채용되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찰감식요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연구논문 평가지침을 제정하여 승진·승급에 반영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연구사업계획에 의한 연구실적 제출을 의무화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과학수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되 지금까지 간부급 위주의 세미나 참석에서 탈피하여 하위직 위주의 연수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마. 연구직 요원에게 특수감정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수사활동비 지급도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란에 특수감정업무를 포함시켜 월 15만원~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 3. 장비보강

가. 연구소에서 마련한 5개년 장비보강계획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이  
「전설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면 수사활동 그 자체가 바로  
과학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잔디구장에서 뛰어보지 못한 축구선수의  
서글픈 현실처럼 수사와 과학수사가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보면 총 176대(51억 900만원)를 '95년부터 '99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9) (단위: 만원)

	계	'95	'96	'97	'98	'99
수량	176대	36	41	35	33	31
금액	510,900	101,500	108,700	108,700	96,100	96,400

※ 이 중 주요첨단장비로 질량분석기, 주사형전자현미경, 중금속 성분분석기, 적외선 분장광도계, 핵자기공명장치 등은 하루 빨리 보유하여야 할 장비들임.

나.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지능화된 강력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전자은행의 설립이 시급한 바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보강과 시약구입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전산입력해야 할 범죄대상과 범위선정 및 합법적 채혈을 위한 법령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리·지원체계 강화**

가. 현재 감정업무처리가 전산화되지 않고 낙후된 수작업에 의존하므로서 긴급중요사건의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정의뢰 접수부터 감정서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고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및 지방분소(또는 지방감식센터)간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과정과 병행하는 감정체계를 확립하므로서 과

학적 업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연구소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면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청 소속으로 전환하고 연구소의 관리보다 연구활동 지원중심으로 총무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어**

수사교범에 과학수사란 「범인발견과 범죄증거수집에 있어 과학적 지식과 과학기재 및 시설을 이용하여 합리적·조직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이 「전설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면 수사활동 그 자체가 바로 과학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잔디구장에서 뛰어보지 못한 축구선수의 서글픈 현실처럼 수사와 과학수사가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다는 것은 경찰이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속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범죄와 싸우는 경찰」일 것이다. 과학수사체계의 확립도 범죄수사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일 것이다. 본래 모습조차 복원하지 않고 「발견」을 말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다시 한번 「수사는 과학 그 자체」라고 강조하고 싶다.